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274

발의연월일: 2022. 7. 4.

발 의 자:김병욱·김교흥·김병기

김정호 · 서영석 · 송갑석

신영대 · 오영환 · 유동수

이병훈 · 이용빈 · 이용선

이정문 · 정성호 · 정일영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시설의 경관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 진하도록 하는 근거가 미비함.

그러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공간인 동시에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공간으로서 국립묘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위해서는 자연친화적이고 시민참여적인 환경조성을 통하여 열린 보훈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립묘지에 묘역을 구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하고 대통령의 묘역 명칭을 '국가원수 묘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안장대상자 및 묘의 면적을 구분할 때에는 '국가원수'가 아닌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에 국립묘지시설의 경관·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국가원수 묘역'을 '대통령 묘역'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립묘지의 현충선양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13조제1항).

법률 제 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장사제도의 발전"을 "장사제도의 발전, 국립묘지시설의 경관·환경 개선사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국가원수"를 "대통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	제4조의2(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
의 수립 등) ① 국가보훈처장	의 수립 등) ①
은 국립묘지의 조성과 확대, 시	
설과 제도의 관리·운영, 안장대	
상의 심사, <u>장사제도의 발전</u> 및	<u>장</u> 사제도의 발전,
각종 현충선양사업 등에 대한	국립묘지시설의 경관·환경 개선
종합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	<u>사업</u>
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u>.</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묘역의 구분) ① 국가보훈	제13조(묘역의 구분) ①
처장이나 국방부장관은 국립묘	
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묘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	
다.	
1. <u>국가원수</u> 묘역	1. <u>대통령</u>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